



#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처리 가이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 목 차

## I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황

1. 연혁	08
2. 주요사업	08
3. 회원의 범주	08

## II 영조물배상공제사업

1. 등록대상	10
2. 보상범위	11
3. 공제등록 절차	11

## III 사고처리 절차

1. 사고처리 흐름도	14
2. 사고처리시 구비서류	16

## IV 영조물배상공제 Q&A

1. 손해배상	20
문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20
문 2.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규는 무엇인가요?	21
문 3. 국가배상법이란 무엇인가요?	22
문 4.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하는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23
문 5. 영조물배상공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추가 특별약관은?	24
문 6. 영조물배상공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면책사유는?	25
2.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26
문 1.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문 2. 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100%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건가요?	26
문 3. 공제회에 사고접수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6

3. 손해사정 .....	27
문 1. 직원이나 종업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보상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	27
문 2.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	27
문 3. 소송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보상한도를 초과 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	27
문 4. 주차장특약에 가입한 경우 차주가 차량 출고시 흠집 등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	28
문 5.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	28
문 6. 락커룸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요? .....	28
4. 합의서 작성 .....	29
문 1.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29
문 2.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29
문 3.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	29
5. 보험금 지급 .....	30
문 1.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면 손해배상금 전부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	30
문 2. 보험금을 피해자가 아닌 피공제자가 수령할 수 있나요? .....	30
문 3.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30
문 4. 사고발생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사업체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에게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30

## V

## 판례 및 사고사례

1. 배상판례 .....	32
• 지반침하로 발생한 도로터에서 사고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여부 ..	32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34
• 도로상에 방치된 돌멩이로 인한 차량파손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여부 ..	36
• 배수로 덮개 등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책임 불인 .....	38
• 하천이 있는 곡선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인정 ..	40
• U자형 굽은 도로에서 과속방지시설 미설치 등 도로 보존상 하자 여부.....	41

• 맨홀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인	42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과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44
<b>2. 사고사례</b>	<b>46</b>
• 공원 음악분수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46
• 계곡에서 물놀이 중 사망한 사고	48
• 샤워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50
• 피담보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52
• 가드레일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	54
• 도서관 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56
• 가로등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58
• 주민센터 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60
• 승마장에서 승마 중 낙마한 사고	62
• ○○행사시 발생한 사고	64
• 해수욕장에서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	66
• 현관 출입문이 날아가 주차장의 차량을 파손한 사고	68
• 주차장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진 사고	70
• 주차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쓰러지면서 차량을 파손한 사고	72
• 수영장 내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사고	74
• 다이빙 강습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	76
• 수영장 출입문에 부딪힌 사고	78
• 결빙된 출입구에서 넘어진 사고	80
• 자전거 주행 중 도로 단층에 충돌하여 넘어진 사고	82
•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는 모래로 인해 넘어진 사고	84
<b>담당자 연락처</b>	<b>86</b>





I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황



# I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황

## 1 연혁

- ▶ 1964. 09.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공제회 설립
- ▶ 1988. 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명칭 변경
- ▶ 2003. 0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법률 제6872호)

## 2 주요사업

- ▶ 공유재산(건물·시설물, 관공선)의 재해복구공제사업
- ▶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공제사업
- ▶ 공공청사정비공제사업
- ▶ 단체상해공제사업
- ▶ 지방재정발전연구지원사업
- ▶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사무 위탁 운영
- ▶ 옥외광고 산업의 육성·발전지원사업

## 3 회원의 범주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별시·광역시와 시·군·자치구
    2.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 II

## 영조물배상공제사업



## II 영조물배상공제사업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 사업

### 1 등록대상

#### ▶ 보통약관

- 공원 : 어린이공원, 대공원, 자연발생유원지(계곡), 휴양림 등
- 해수욕장, 관광동굴 등
- 상·하수도 시설 : 취수장, 정수장, 폐수·하수처리장 등
- 각종 회관 : 문예회관, 복지회관, 시·군·구민회관 등
- 체육시설 : 수영장, 야구장, 종합(공설)운동장, 사격장, 체육관, 국궁장 등
- 환경시설 :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등
- 판매시설 : 농·수·축산물 도소매시장, 공판장 등
- 전시시설 : 미술관, 기념관, 박물관 등
- 교육시설 : 대학, 유아원, 각종교육원,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등
- 업무시설 : 청사, 보건소, 소방서 등

#### ▶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담보 : 공제등록된 시설 내에서 회원의 책임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해 치료비를 담보
- 물적손해확장담보 : 회원이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생산물담보 : 회원이 제조, 판매, 공급한 음식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 2 보상범위

- ▶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비용
- ▶ 응급처치, 긴급호송, 조치의 비용
- ▶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의 비용
- ▶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 ▶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 3 공제등록 절차

### ▶ 정기등록

- 공제기간 :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간)
- 등록시기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일괄등록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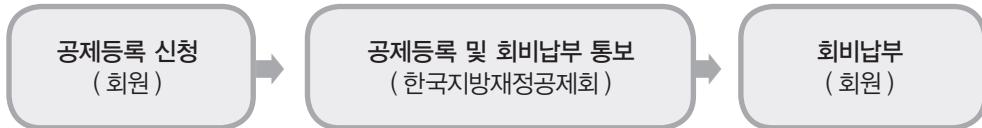
### ▶ 수시등록

- 연도 중에 신규물건 발생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신청

### ▶ 자동갱신

- 공제기간이 만료됨에도 변경, 해지에 대한 회원의 신청이 없는 경우

### ▶ 등록절차



### ▶ 제출서류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신청서



# III

## 사고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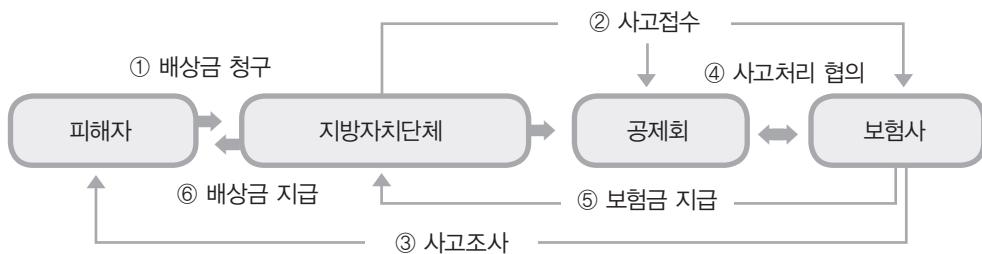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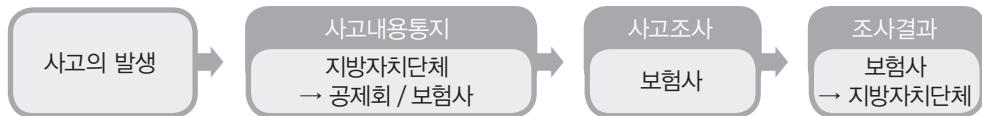
## 사고처리 절차

### 1 사고처리 흐름도

#### ▶ 사고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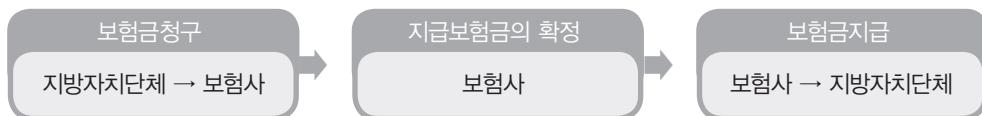


#### ▶ 사고의 통지 및 조사



※ 보험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본사 또는 각 지역의 보상조직을 이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처리

####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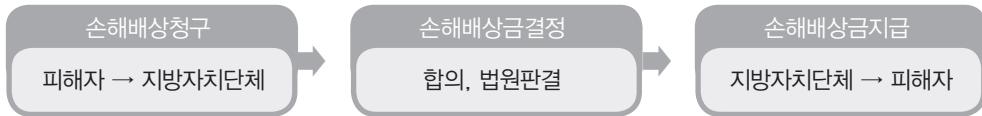


※ 피해자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결정금액 전액 보상

※ 보험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험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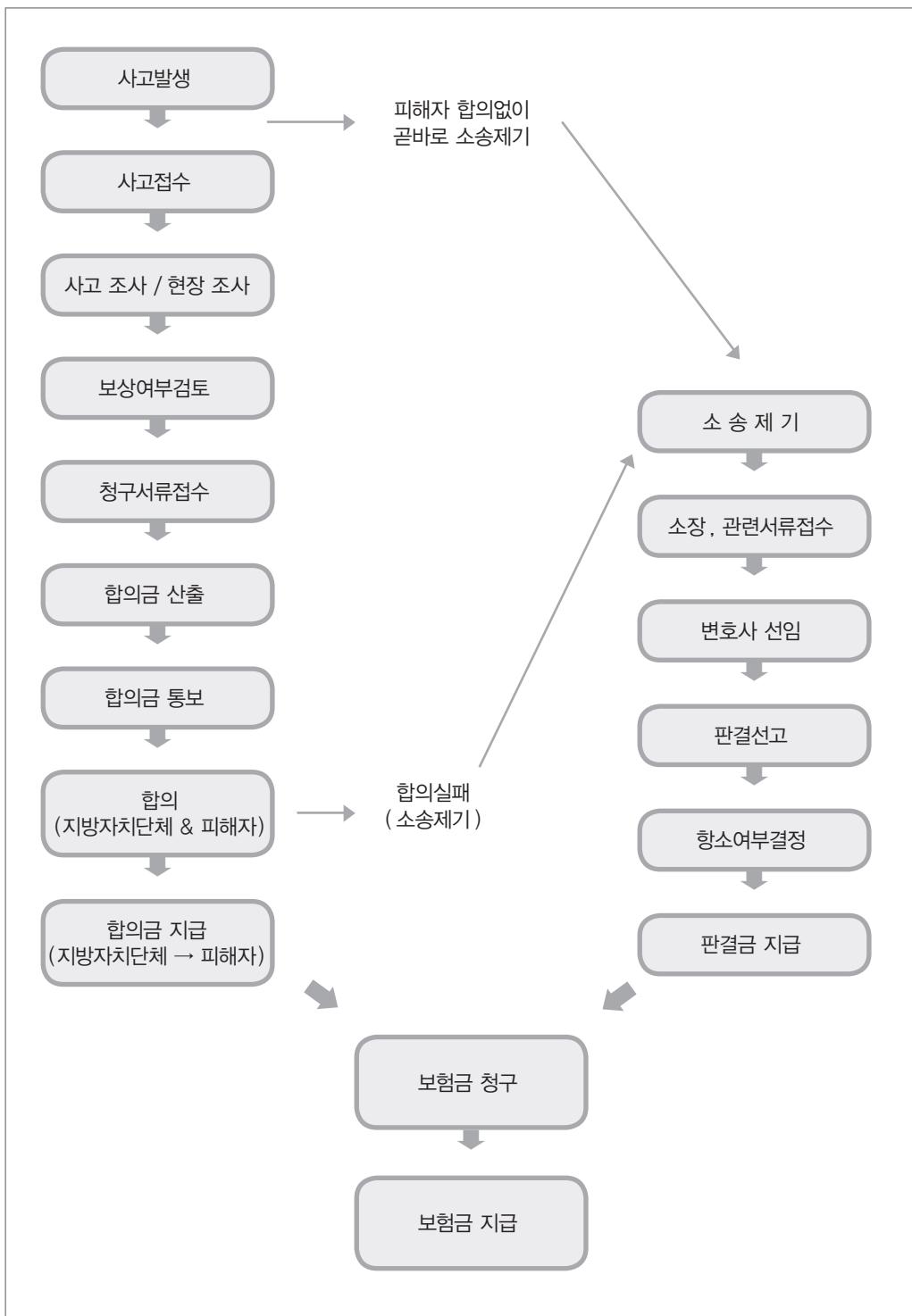
※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판결금액 전액 보상

#### ▶ 피해자와의 문제 해결



※ 상기 과정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대행 및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소송 방지를 유도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를 위해 최대한 지원

## ▶ 배상책임 사고처리 과정



## 2 사고처리시 구비서류

1. 보험사고 접수양식(첨부 1)
2.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地籍圖) 및 도로현황표
3. 피해사실 입증 서류
  - 사고현장 사진
  - 피해자 사고경위서(첨부 2)
  -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치료비 영수증 등)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보험금 청구서
  - 합의서
  - 보험금 입금통장 사본



(첨부 1)

## 보험사고 접수양식

회원명			
가입 시설명	계약번호		
사고일시	년 월 일	사고시각	
사고장소			
사고경위			
사고통보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전화 : 팩스 :		
자치단체 보험처리 담당자	소속 부서 : 전화 : 팩스 :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연락처 :		
피해사항	1. 재물 피해(차량일 경우 차종 및 차량번호 기재) <input type="checkbox"/> 피해목적물 <input type="checkbox"/> 피해추산액  2. 신체 장해 <input type="checkbox"/> 피해자 상태		
기타			

(첨부 2)

## 사고경위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 경에서

발생한 피해자로서 이 건의 사고 발생경위와 사고당시 정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1.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한 사고입니까?
2. 사고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도로사고의 경우) 사고당시 운전자는 누구였습니까?
4. (도로사고의 경우) 사고당시 탑승자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탑승인원, 성명, 연락처는?
5. (도로사고의 경우) 사고당일 운행경로 및 운행목적은 무엇입니까?
  - 출발지 :
  - 경유지 :
  - 목적지 :
6. 위 사고를 목격한 사람 및 연락처는?
7. 사고 후 조치사항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연락처)

# IV

## 영조물배상공제 Q&A



# IV 영조물배상공제 Q&A

## 1 손해배상

### ▶ 문 1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 ☞ 영조물이란

학문적으로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요 영조물로는 공원, 유원지, 놀이터, 도로, 맨홀, 건널목 경보기, 신호등, 철도 건널목, 공중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하자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관리자의 고의와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닙니다.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험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문 2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규는 무엇인가요?

☞ 아래의 법률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헌법 제29조제1항(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문 3 : 국가배상법이란 무엇인가요?

- 도로 등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배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 국가배상법입니다.

### 국가배상법

#### ◎ 목 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 (제1조)

#### ◎ 배상책임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조)

※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 범 위

-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5조)

#### ◎ 신청절차

- ①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한다. (제12조)

※ 배상신청심의 : 법무부(본부심의회),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구심의회)

- ②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시 신청서와 함께 피해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시행령 제17조)

※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



▶ 문 4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하는 보상하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청사 등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건물이 수침을 입은 경우
- 도로파손으로 주행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책로에 돌출된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경우
- 수압으로 맨홀뚜껑이 열리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에스컬레이터의 급작스런 정지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사회복지관의 직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이용자의 의복을 오손시킨 경우
- 출차 중 직원이 기계를 잘못 작동하여 차단봉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훼손된 경우
- 보육시설의 선생님이 아동을 안다가 떨어뜨려 부상을 입힌 경우



## ▶ 문 5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추가 특별약관은?

### ☞ 구내치료비담보특약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피공제자의 과실은 없으나 고객 등 시설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구내치료비담보특약이 필요한 경우〉

- 건물 출입구 자동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출입하던 이용객이 급하게 뛰어들어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 ☞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자동차 보험에서 운송 중인 물건이 파손된 경우 운반차량의 대물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물적손해확장담보 특약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물적손해확장담보에서도 귀금속, 골동품, 화폐, 유가증권, 유리제품, 화장품 등 고가의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이 필요한 경우〉

- 지게차로 고가의 기계를 운반하다가 운전 실수로 기계가 쓰러지며 파손된 경우  
: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에서 면책이나 동 특약 가입시는 보상 가능





## ▶ 문 6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 면책사유는?

### ☞ 중요면책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등에 의한 하천, 호수, 운하의 범람 또는 산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의사(한의사,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 (뜸을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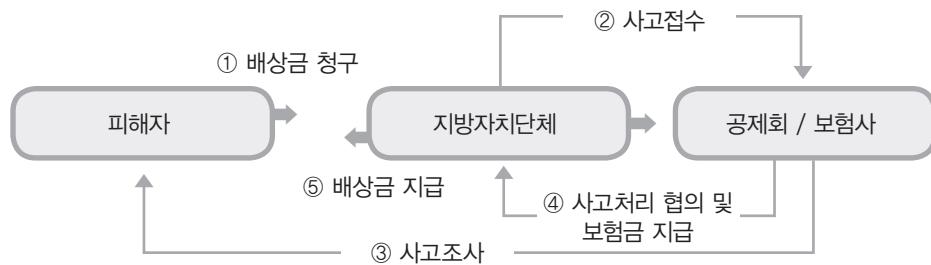


## 2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 문 1 :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조물배상공제는 피해자가 책임의 발생 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제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 2 : 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100%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을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이 1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20%인 경우 피해자측 과실분을 상계한 후 실제로 보상되는 금액은 80만원이 됩니다.

- ▶ 문 3 : 공제회에 사고접수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없이 공제회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공제계약으로 담보되는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3 손해사정

- ▶ 문 1 : 직원이나 종업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보험사가 보상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영조물배상공제는 업무수행상의 과실을 담보하며 직원 또는 종업원의 과실이라 할지라도 소유(관리)자의 관리 의무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므로 보상하여 드리고 직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개인적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 문 2 : 손해배상금이 산정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사례별로 상이하나, 구비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1~2주 정도의 추가 조사 후 손해배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 문 3 : 소송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보상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내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문 4 : 주차장특약에 가입한 경우 차주가 차량 출고시 흠집 등 파손된 부분을 발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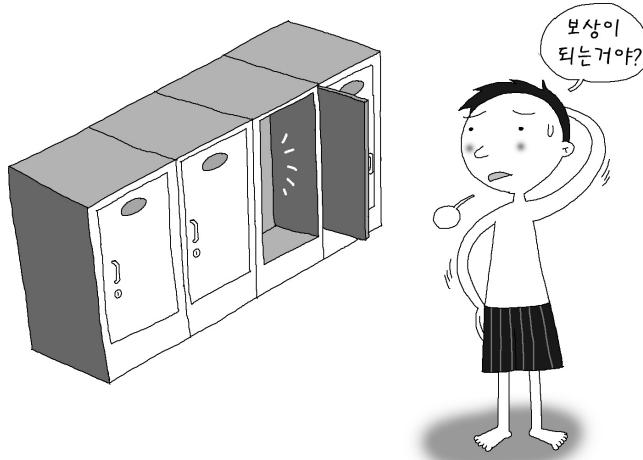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된 차량을 안전히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원인 미상인 경우에도 주차장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이 사고장소가 주차장 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CCTV 녹화 내용이나 파손 상태 등을 참조해, 주차장 내 사고인지를 판단하여 주차장 내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문 5 :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대물배상책임만 담보할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는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이 포함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문 6 : 락커룸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요?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탁물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4

## 합의서 작성

## ▶ 문 1 :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합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입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 진행을 하지 않고 보험사에 합의 절충을 요청한 경우의 합의 당사자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문 2 :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합의서상에 인감 날인이 되었을 경우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문 3 :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상속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5 보험금 지급

### ▶ 문 1 :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면 손해배상금 전부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매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또는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자기부담금이란?

- 빈발하는 소손해를 면책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절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금액으로 면책금액이라고도 함.

### ▶ 문 2 : 보험금을 피해자가 아닌 피공제자가 수령할 수 있나요?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험금은 합의금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선합의를 한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셨다면 피공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서 외에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문 3 :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보험사는 지급할 보험금이 합의를 통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 문 4 : 사고발생의 원인이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사업체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V

## 판례 및 사고사례



# V 판례 및 사고사례

## 1 배상판례

지반침하로 발생한 도로턱에서 사고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여부

### 1. 사안의 정리

- '09. 4. 25. 12:10 경, 관광버스가 45명의 관광객을 탑승시키고 시속 30km 정 도로 진행하던 중 아스팔트 차로와 교량이 이어지는 이음새 부분에 심한 턱이 존재한 연유로 버스가 크게 요동치면서 공중으로 뿅 떴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5명의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거나 버스 천 정에 머리를 부딪치고 떨어져 부상한 사고 발생

### 2. 쟁점

- 지반침하로 심한 도로턱이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과실 유무

### 3. 사실관계

- 사건 도로는 신 대교(길이 30m, 폭 9m)로 접어드는 차로 부분에 형성된 것으로 그 도로턱의 높이는 5cm이고, 폭은 약 20cm이며 경사도는 14°로서, 도로턱이 발생한 이유는 신대교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이 오르막 경사길로서 신대교 진입 직전의 노면이 침하되었기 때문임.
- 사고지점 커브길이 시작되는 부분에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표지판과 서행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도로의 심한 도로턱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사고 이후 사고 지점을 통과한 운전자들이 도로턱의 위험성을 호소함에 따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도로턱을 보수함.

#### 4. 판결내용

-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상에 심한 도로턱이 있는 경우 차량이 도로턱을 넘는 순간 크게 요동치면서 운전자 및 승객이 공중으로 뿅 떴다가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또한 차량 운전자의 핸들 조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더구나 그러한 도로턱이 오르막길 정점에 위치하였을 때에는 전방의 도로상황에 대한 시야장애가 있는 등 이 사건 사고도로는 도로로서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사고버스 운전자의 경력 및 운전 실태, 사고지점에 진입할 당시 사고버스의 속력, 피해자들의 안전띠 착용여부, 사고지점 주변의 안전표지판 설치상황, 사고발생 빈도 및 사고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판단함.

#### 5. 시사점

- 도로 곳곳의 지반침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자 인정

#### 6. 소송번호

- 대전지법 흥성지원 2009가단8383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1. 사안의 정리

- 소외 ○○○는 1996. 7. 4. 20:20 경, 트럭을 운전하여 ○○-○○○ 고속도로상을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 ○○구 ○○동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인 ○○고속도로 유입로에 진입하여 그 2차선상을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2차선 도로와 갓길에 걸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마침 같은 곳에서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80° 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소외 □□□을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에게 상해를 입힘.

### 2. 쟁점

- 민법 제758조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3. 판결내용

- 민법 제758조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 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임.

#### 4. 소송번호

- 대법원 1999.12.24. 99다45413



## 도로상에 방치된 돌멩이로 인한 차량파손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여부

### 1. 사안의 정리

- '08. 8. 27. 14:40 경, ○○구 ○○동 ○○고가 넘어 ○○병원 건너편 노상에서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던 중 선행차량이 방지턱 같은 것을 지나는 것을 목격한 후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옆 차선 차량의 이동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급제동도 어려워 부득이 노상에 떨어진 돌을 타고 진행하여 원고 소유 자동차가 파손된 사고

### 2. 쟁점

- 도로상 돌멩이로 인한 진행 차량 파손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책임 존부

### 3. 판결내용

- 이 사건 돌멩이의 크기나 모양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돌멩이가 이 사건 도로상에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사람도 횡단보도를 통하여 횡단 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도로상에 돌멩이가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다양하여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 사건 도로상에 돌멩이가 떨어져 방치되어 있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4. 시사점

- 기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도로상 방치물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고에 대한 그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였으나, 본 사안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인 경우 도로상 방치물이 물리적인 시간차 없이 도로에 있을 수 있는 점, 도로 관리자가 다수의 넓은 도로를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리 불가능한 점을 인정

#### 5. 소송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71979



## 배수로 덮개 등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한 책임 불인

### 1. 사안의 정리

- ○○스카이웨이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를 주행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밖의 철제 휠스에 부딪혀 뒷좌석 동승자의 상체가 차 밖으로 나가며 휠스에 두부를 직접 충격하여 사망
- 원고 ○○해상은 배수로 덮개 미설치로 차량 좌측 바퀴가 빠지며 휠스에 부딪히게 되어 동승자가 사망케 되었다며 ○○시의 영조물 설치상 하자(책임비율 40%, 0.8억)를 주장

### 2. 쟁점

- 영조물 설치상 하자(안전표지판, 배수로 덮개 미설치) 여부 및 사고와의 인과 관계

### 3. 판결내용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함.
- 이 사건 운전자가 만취하여(혈중알콜농도 0.139%)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로 굽은 완만한 내리막길에 이르러 미리 감속하지 못하고, 핸들을 급조작하다 휠스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인 사실, 사고지점은 시야나 통행 장해물이 없으며 안전표지판, 반사경, 가로등이 설치된 사실,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해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배수로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철제 헨스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차량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마찰력으로 충격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4. 시사점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 판례를 기초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의한 부주의를 항변하고 배수로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배수로 폭, 크기 및 펜스와의 거리, 차량 충격 동선 등을 감안할 때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인

#### 5. 소송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167426



## 하천이 있는 곡선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인정

### 1. 사안의 정리

- 주간에 편도 1차선 좌로 굽은 도로에서 주행중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교 교명주를 충격 후 약 1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
- 운전자 및 탑승자 1명 사망, 탑승자 2명 중상

### 2. 쟁점

- 가드레일 미설치 하자 여부

### 3. 판결내용

- 사고지점은 직선구간으로 이어지다가 급하게 좌로 굽은 곳이고, 원심력에 의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점, 도로 아래 하천이 있어 우측으로 이탈하는 경우 하천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가드레일이 ○○교로부터 4미터 정도 끊어져 있고 연결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드레일 설치시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0%를 인정하여 판결함.

### 4. 소송번호

-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5975



## U자형 굽은 도로에서 과속방지시설 미설치 등 도로 보존상 하자 여부

### 1. 사안의 정리

- 주간에 편도 1차선 우로 U자형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서 피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옆 옹벽을 충격하여 파손된 사고



### 2. 쟁점

- 제한속도 60km 급 커브 구간에 과속방지시설 미 설치 등 도로설치상, 보존상 하자 여부

### 3. 소송진행

- 소송 제기 전 안전계몽 표지판 및 반사경 갈매기 표지판은 있었으나, 중앙분리대나 속도제한 표시판, 과속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
- 사건 이후 소송 제기 중 적색 아스팔트 포장 및 중앙 분리봉 및 과속방지시설 설치
- 사고지점에 대한 경찰서 사고접수내역 사실조회시 1년에 1건 이상씩 사고 발생
- 과속방지시설 설치 후 도로상황 및 차량 주행행태 동영상 촬영 증거 제출  
→ 과속방지시설 설치 후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거의 없어졌음.

### 4. 판결내용

- 사고지점은 우로 굽은 정도가 아니라 시속 20km로 절대 감속해야 할 정도의 U자형 커브길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과속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도로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 책임 15%를 인정하여 판결함.

### 5. 소송번호

- 중앙지법 2009가단169712

## 맨홀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 불인

### 1. 사안의 정리

- '09. 4. 22. 19:20 경, 만취한 승객이 버스 앞문으로 하차 후 차도로부터 17cm 높이로 설치된 인도 위를 걸어가다 차도로 넘어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동 사건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 두부손상 사망
- 동 사건 사고현장에는 보차도에 1/2씩 걸쳐 설치된 지름 약 80cm의 원형 맨홀이 있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이 인도쪽 원형 맨홀 주위로 반원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부주의하게 인도를 보행하는 경우 움푹 파인 맨홀 설치 지점에 발을 헛디뎌 넘어질 위험성 상존

### 2. 쟁점

- 망인이 동 사건 맨홀에 발을 헛디뎌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3. 판결내용

- 맨홀 주위가 동그랗고 반원형으로 파여 있어 망인이 그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거나 질문에 맨홀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담당 경찰관의 증언과 망인이 맨홀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취해서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넘어진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버스 승객 증언, 그리고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버스에서 내려 인도를 걸어가다 주취로 인해 이 사건 맨홀과는 무관하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균형을 잃으면서 차도 쪽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청구를 기각함.

#### 4. 시사점

- 동 사건의 유력한 목격자(버스 승객 및 담당 경찰관)를 증인으로 참석시킴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 책임과 상관없이 망인 스스로 넘어졌다는 심증을 굳히게 한 사안으로 증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



### 1. 사안의 정리

- 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건물 내에서 보일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보일러 보수를 위해 방문한 업체의 차량 파손
- 파손된 차량의 자동차보험사가 보상 후 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상 책임을 물어 구상 소송 제기

### 2. 쟁점

- 피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보일러 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3. 판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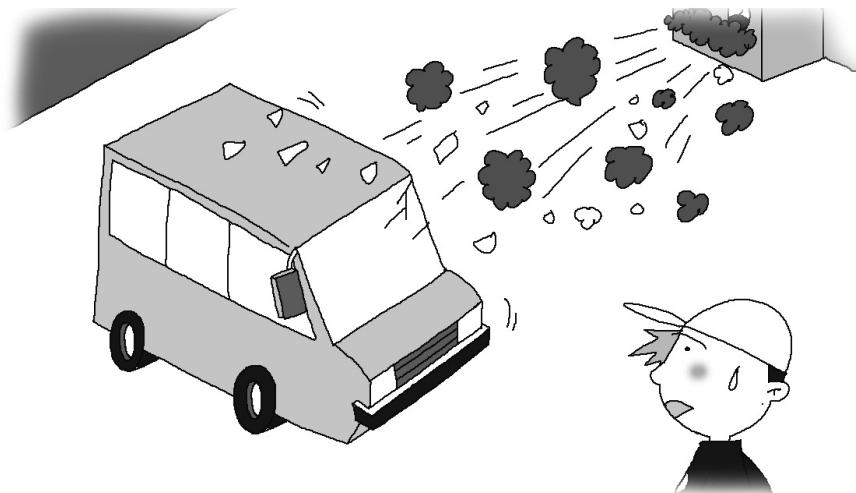
- 이 사건 폭발사고는 보일러 기기를 무자격자에게 맡겨 압력을 견디지 못한 보일러가 폭발한 것으로 보일러 업체 관련자 기소
- 피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해태로 기소



-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은 보일러 회사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단지 관리상 책임이 인정된 것 뿐이며, 이러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 4. 시사점

- 공무원의 관리상 책임만으로는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 2

## 사고사례

### 공원 음악분수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공원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5천만원 /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보험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23일 08:00 경
- ▶ 사고장소 : ○○공원
- ▶ 사고내용

상기 일시 경 피해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에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경유하여 이동하던 중, 음악분수대를 지나 진입로로 나오는 순간 살얼음 상태의 바닥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부상을 입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인 ○○시청은 ○○공원의 당해 시설물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수의 불특정 주민들이 보행 및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곳이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 시설물이 산책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보행 인에 대한 위험표시를 하든지 일시 통행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여야 했으나 이를 태만히 한 것이 본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기의 전 사고경위 및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해자는 위험변식능력을 가진 성인으로서 주간에 공원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는 경우 전방의 바다상태를 잘 살펴 자기신체감호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이를 태만히 한 과실 또한 명백하다 할 것이나, 당해 바닥이 미끄러운 화강암 재질이어서 미끄러운 상태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경험칙상 피해자의 과실을 30%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며, 달리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살펴볼 수 없는 바,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한,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단위 : 원)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50,000,000	8,000,000	100,000	7,900,000



## 계곡에서 물놀이 중 사망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계곡유원지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2억원
  - 대 물 : 1사고당 3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30만원
- ▶ 보험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08년 8월 13일 16:30 경
- ▶ 사고장소 : ○○계곡유원지
- ▶ 사고내용

상기 일시에 ○○계곡유원지에서 사고자가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자 ○○○이 다이빙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고 친구들이 구조하여 응급처치와 함께 119에 연락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계곡유원지의 사용 및 관리자로서 사고 당시 수상안전요원 및 공무원들이 ○○계곡유원지를 돌면서 순회근무를 하였고, 위험사항에 대한 현수막 등을 유원지 곳곳에 비치하고 있었다는 점, 사고자가 다이빙을 하면서 의식을 잃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면책사고로 판단됨.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면책사고로 과실 상계는 생략함.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면책사고로 손해 액이 발생되지 않음.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추정손해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	300,000	–



## 샤워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문화체육센타 수영장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3억원
  - 대 물 : 1사고당 2백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2월 8일 13:40 경
- ▶ 사고장소 : ○○문화체육회관 내 수영장 샤워실
- ▶ 사고내용

상기 일시에 수영수업(13:00~14:00)을 마치고 샤워장으로 가던 피해자가 샤워부스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고 있어 물을 피하려고 통로 바닥으로 걷던 중 바닥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본 건은 ○○문화체육회관 내 수영장 샤워실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객의 안전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수영장 바닥 마감재가 논슬립 자기타일 시설인 점, 별도의 청소시간을 두어 샤워실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항으로 보아 샤워실로써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안전성은 구비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됨.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본 건은 피공제자의 관리상 과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100%로 판단됨.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본 건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고이므로,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구내치료비 보상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치료비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구내치료비	1,000,000	110,600	-	110,600



## 피담보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대공원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3억원 / 1사고당 5억원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07월 25일 23:00 경
- ▶ 사고장소 : ○○대공원 전철역 5번 출구 앞 50m지점
- ▶ 사고내용

상기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은 지인과 함께 보행 중 사고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뚜껑을 밟고 아래로 빠지면서 상해를 입음. 조사 결과 당시 사고가 발생한 인도에는 빗물받이 뚜껑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랜 시간 관리 및 보수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빗물받이 뚜껑 및 도로포장 상태가 많이 노후된 상태였으며, 마침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빗물받이 뚜껑을 밟으면서 뚜껑 아래로 전도되는 사고 발생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 본 사고의 피공제자측 직원은 사고발생 사실을 민원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인지하게 되었으며 자체 조사 결과 사고발생 지역 및 시설물이 ○○대공원의 소유, 관리 대상 지역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으나, 조사자가 검토한 결과 지

적도 상에서 피공제자측 주장과는 달리 사고지역이 피공제자측 소유 및 점유 지역이 아님을 확인, 피담보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공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면책사고로 논의를 생략함.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동 사고 조사 결과 피담보시설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면책사고로 손해액이 발생되지 않음.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추정손해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300,000,000	-	100,000	-



## 가드레일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도로
- ▶ 보상한도액
  - 대인대물일괄 : 1사고당 5천만원 / 연간총보상한도 1억원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0만원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8월 2일 15:30 경
- ▶ 사고장소 : ○○마트 앞 노상
- ▶ 사고내용

피해자가 사고당일인 상기 일시에 ○○마트에서 나와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손으로 잡는 순간 가드레일이 넘어지면서 표지판 기둥에 이마 등이 부딪쳐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안면부 및 목부분 봉합술을 받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이 건 사고와 관련된 가드레일은 횡단보도 옆 상가 앞에 설치된 것으로 주변 상가 고객 등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의 이유로 자주 머무르는 장소여서 가드레일에 기대는 등의 행위를 할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바, 그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자인 ○○구청은 가드레일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등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자기신체안전에 스스로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 다만 피해자가 위 시설물을 잡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이마를 부딪친 부분 또한 가드레일과 교통표지판과의 연결 부분으로 볼트 고정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과실은 약 30% 내외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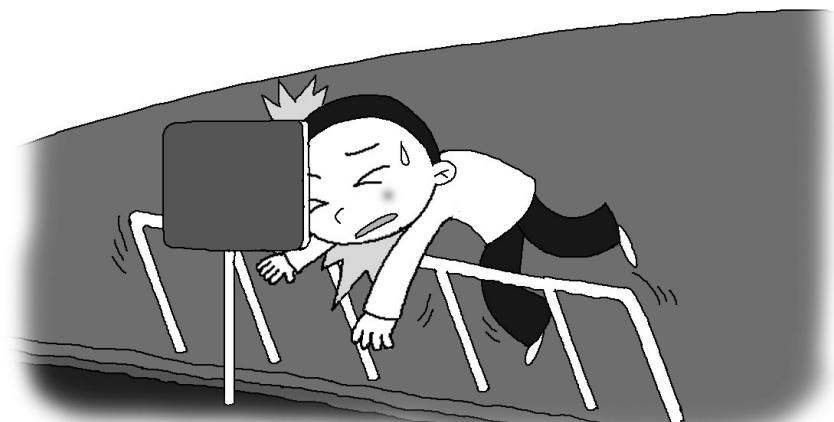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이 건 손해는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단위 : 원)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인대물일괄	50,000,000	1,080,000	500,000	580,000



## 도서관 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도서관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대물 : 1사고당 1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19일 18:40 경
- ▶ 사고장소 : ○○도서관
- ▶ 사고내용

피해자 ○○○이 ○○도서관 3층 중앙복도의 난간 주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사상태로 치료를 받던 과정에 사망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이 건 사고 도서관이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추락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경고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난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각별히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경험칙상 피해자의 과실을 70%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피공제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92,000,000	100,000	91,900,000



## 가로등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체육공원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2억원
  - 대물 : 1사고당 2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22일 21:20 경
- ▶ 사고장소 : ○○체육공원 내 트랙
- ▶ 사고내용

상기 일시에 피해자 ○○○이 상기 장소에서 조깅을 하던 중, 사고지점의 가로등이 소등되어 있어 주위가 어두워 보도에 있는 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치면서 앞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이 건 사고장소인 ○○체육공원의 관리책임자로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 〇〇〇으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각별히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을 40% 정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1,920,000	100,000	1,820,000



## 주민센터 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주민센터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4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11일 15:30 경
- ▶ 사고장소 : ○○주민센터
- ▶ 사고내용

2010년 10월 11일 피해자인 ○○○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1통을 발급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민센터 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신체상해를 입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금번 사고는 피해자인 ○○○이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귀가하던 중 주민센터 1층 마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신체상해를 입은 사고로, 피공제자가 관리하는 주민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하며, 또한 과거에도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 미끄럽다는 민원제기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금번 사고에 대하여 피공제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인 ○○○도 사고장소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고 약간의 경사면도 있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동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30%의 과실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가 주민센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생긴 우연한 사고로서 타인의 신체상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1,040,000	100,000	940,000



## 승마장에서 승마 중 낙마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승마장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5억원
  - 대물 : 1사고당 2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04월 06일 14:40 경
- ▶ 사고장소 : ○○승마장
- ▶ 사고내용

피해자 ○○○가 사고일 오전 ○○승마장에서 승마를 하고 점심식사 후 다시 승마를 시작하던 중 기승 10분 후 말이 갑자기 놀라면서 날뛰는 바람에 고삐를 잡고 한동안 로데오를 하다가 낙마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말은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승마 중 불상의 원인으로 갑자기 놀라면서 금번 사고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승마장의 관리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공제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승마 경력이 3년된 숙련자로서 충분히 말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때문에 승마시 이에 따른 방어를 하면서 승마를 즐겨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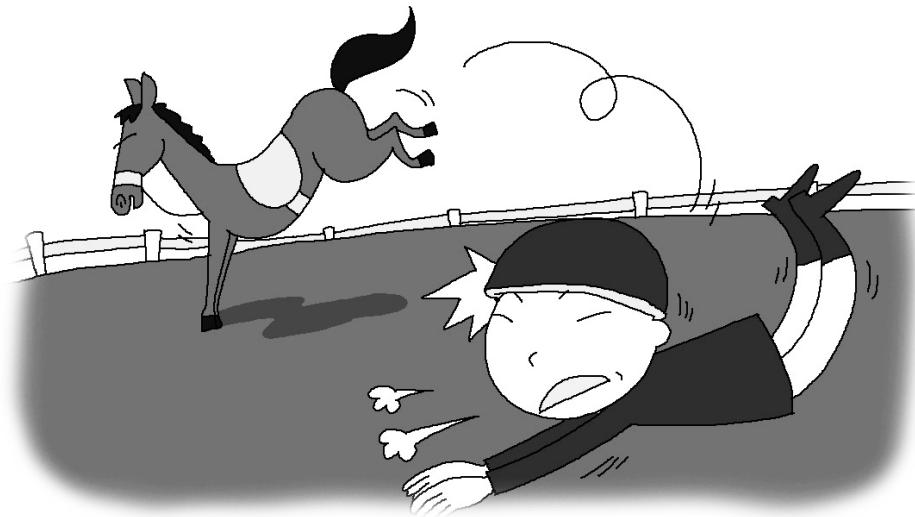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동 사고는 피공제자의 불법행위가 전혀 수반되지 아니한 사고로 조사되었는 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사고로 사료되어 영조물 배상공제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의거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구내치료비	1,000,000	해당없음	-	1,000,000



## ○○행사시 발생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예술회관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5천만원 / 1사고당 1억원
  - 대물 : 1사고당 2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1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11월 12일 11:50 경
- ▶ 사고장소 : ○○예술회관 동편 여자화장실 입구
- ▶ 사고내용

피해자 ○○○이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인 가요제”에 참가하는 언니를 응원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예술회관을 방문하여 1층 동편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중, 바닥에 잔재한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허리에 골절상을 입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행사를 주최하며 많은 손님들의 방문이 예상될 경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청결 및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게끔 세심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화장실 구조상 손을 씻은 이용객이 맞은 편에 비치된 종이타올을 이용하기 위해 바닥에 물을 흘릴 개연성이 높은 점을 인지하여 수시로 물기를 닦아내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용객이 넘어지며 중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

공제자는 이 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화장실이란 점을 감안하여 물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의 과실이 30% 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단위 : 원)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50,000,000	3,000,000	100,000	2,900,000



## 해수욕장에서 수영미숙으로 익사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해수욕장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5억원
  - 자기부담금 : 대인 1사고당 10만원
- ▶ 보험기간 : 2008. 01. 01. ~ 2008.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08년 07월 27일 14:50 경
- ▶ 사고장소 : ○○해수욕장
- ▶ 사고내용

피해자 ○○○는 7월 27일 ○○해수욕장에서 오빠인 ×××, △△△과 수영을 하던 중 수영 미숙으로 ×××과 함께 물에 빠짐. 사고 직후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한 후 보트를 이용해서 ×××를 구조하였으나, 피해자 ○○○는 해초류에 걸려(추정)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해경에 의해 구조 후 ○○병원에서 응급치료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해수욕장을 관리함에 있어 1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한 ×××는 즉각 구조할 수 있었으나, 부족한 인원으로 피해자를 적시에 구조하지 못함. 구조보트 또한 ○○해수욕장에는 없었고, 인근 해수욕장에 1대가 비치되어 있어 수상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였음. 그리고 ○○해수욕장은 해초류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 등으로 미루어 금번 사고의 피공제자인 ○○군청에게 시설물의 결함 및 안전관리 태만에 의한 과실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금번 사고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는 만 10세의 초등학생으로 위험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으며, 사고 해수욕장 인근에서 함께 거주했던 대리감독자인 조부모 또한 피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피해자측 과실 비율은 75%가 합리적이라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금번 사고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성립하므로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인 ○○군청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65,000,000	100,000	64,900,000



## 현관 출입문이 날아가 주차장의 차량을 파손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아파트 옥외주차장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3억원
  - 대 물 : 1사고당 3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27일 05:00 경
- ▶ 사고장소 : ○○아파트 A동 주차장
- ▶ 사고내용

상기 일시 경 ○○아파트 당직 경비원 ○○○가 순찰을 돌던 중 A동 현관 출입문이 강풍에 의해 빠져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 차량에 부딪히며 깨진 유리 파편이 차량 외부를 파손시킨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본 사고는 피공제자측의 관리상의 하자 및 영조물의 설치·구조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차량파손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주차공간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으며, 피해차량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새벽에 발생한 사고인 바 피해자측의 과실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동 사고는 피공제자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로 판단되는 바,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물	30,000,000	5,651,000	100,000	5,551,000



## 주차장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3억원
  - 대 물 : 1사고당 3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12월 15일 20:20 경
- ▶ 사고장소 :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내
- ▶ 사고내용

상기 일시 경 피해자 ○○○이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내에 세워둔 피해자 차량을 향해 걸어가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순간 발밑에 설치된 카스토퍼에 발이 걸려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이 사건에서 카스토퍼의 위치나 크기가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정되었다거나 그러한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인도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서는 부분이 밤에는 어두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인도에서 내려오던 보행자가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만약 눈에 잘 띠지 않는 위 검정색 카스토퍼에 형광 반사판을 장치하거나 채도가 높은 다른 색깔을 덧칠하고, 이러한 위험을 조심하도록 주의하는 내용의 표시를 해 두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

는 바, 피공제자가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혹 발생할지 모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공제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주차장에 카스토 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의 과실이 20% 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동 사고는 피공제자측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로 판단되는 바,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2,160,000	100,000	2,060,000



## 주차장에 설치된 조명탑이 쓰러지면서 차량을 파손한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주차장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3억원
  - 대물 : 1사고당 3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2일 07:30 경
- ▶ 사고장소 : ○○ 옥외주차장
- ▶ 사고내용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탑이 강풍에 의하여 쓰러지면서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2대의 차량 지붕 등을 파손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조명탑의 설치 하자에 의한 과실로 고객 차량을 파손시킨 사고인 바, 피공제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동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거하여 본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직접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공제자측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약 60%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측의 과실은 40%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동 사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며,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바,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단위 : 원)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물	30,000,000	5,571,980	100,000	5,471,980



## 수영장 내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종합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3천만원 / 1사고당 3억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18일 12:30 경
- ▶ 사고장소 :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내 목욕탕 입구
- ▶ 사고내용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수영복을 착용한 다음 샤워를 하고 수영장으로 가기 위해 라커룸에서 목욕탕으로 들어가던 중 목욕탕 입구 바로 앞의 경사진 바닥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신체상해를 입게 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 및 목욕탕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사고가 발생한 곳은 목욕탕 입구 앞의 경사진 부분으로 미끄럼방지 대리석 재질이기는 하나 물기 및 비누 등의 이물질이 있을 경우 이용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물질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를 하거나 미끄럼 주의문 등을 게시하는 등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수영장 및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경사진 곳을 지나갈 때 신체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자기신체안전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 73세의 노령 여성으로 위와 같은 자기신체안전 보호의무 해태의 정도를 높이 감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30,000,000	9,739,000	100,000	9,639,000



## 다이빙 강습 중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구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5억원
  - 대 물 : 1사고당 2백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1월 20일 08:40 경
- ▶ 사고장소 : ○○구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4번 레인
- ▶ 사고내용

피해자 ○○○는 2009년 7월부터 수영강습을 받은 자로서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담당 강사가 다이빙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여 손을 들고 나간 후 개인 강습을 받던 중 입수하는 순간 머리를 바닥에 충돌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사고 당시 피해자를 지도하던 담당 수영강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수영 강습생에게 다이빙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안전에 주의하면서 다이빙을 하도록 충분히 강습하고, 특히 머리가 바닥에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연습을 시킨 후에 입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피공제자는 수영 강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금번 사고의 피해자도 다이빙을 함에 있어 머리 부분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35%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조물 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500,000,000	100,500,000	100,000	100,400,000



## 수영장 출입문에 부딪힌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청소년문화센타 실내수영장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8천만원
  - 대물 : 1사고당 5천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자기부담금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6월 26일 16:50 경
- ▶ 사고장소 : ○○수영장 출입문
- ▶ 사고내용

피해자 ○○○이 수영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하여 이용객이 많음을 확인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던 중 출입 유리문에 부딪히며 코뼈가 골절된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피공제자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관리 및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바깥 출입문에 색상 띠를 부착한 것과 달리 안쪽 출입문에는 개폐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사고를 유발할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공제자는 이 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건 사고장소를 오래전부터 자주 이용하여 수영장 시설물에 익숙한 상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전방을 보다 면밀히 살폈을 경우 이건 사고를 능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000의 과실이 70% 정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단위 : 원)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80,000,000	1,800,000	100,000	1,700,000



## 결빙된 출입구에서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설명 : ○○주민센터
- ▶ 보상한도액
  - 대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3억원
  - 대물 : 1사고당 2백만원
  - 구내치료 : 1인당 1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구내치료비 없음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1월 12일 11:00 경
- ▶ 사고장소 : ○○주민센터 출입구 경사로
- ▶ 사고내용

상기 일시 경 피해자 ○○○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출입구 계단 양측으로 설치된 경사로를 이용하여 나가던 중 추운 날씨로 인해 결빙된 부분을 밟고 넘어지며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빙 구간의 얼음을 제거하는 등 유지, 보수, 관리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본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사고 당시 사고장소가 결빙되어 있어 넘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보여지는 바, 피해자에게 본인 부주의에 대한 과실을 3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금번 사고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된 바,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인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2,515,120	100,000	2,415,120



## 자전거 주행 중 도로 단층에 충돌하여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억원 / 1사고당 2억원
  - 대 물 : 1사고당 1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26일 01:25 경
- ▶ 사고장소 : ○○자전거·보행자도로
- ▶ 사고내용

피해자 ○○○가 배우자와 함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여름철 수해로 인해 일부 파손되어 생긴 도로의 단층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단층면에 자전거가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본 사고는 피공제자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시청은 도로 노면이 파손되어 단층이 생겼을 경우 즉시 복구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공제자는 민법 제750조에 기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피해자도 위험변식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이동 중에는 항상 전방 도로의 상태 및 지면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동하는 등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그 과실의 정도는 30~40%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 사고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피공제자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0	4,700,000	100,000	4,600,000



## 자전거도로에 깔려 있는 모래로 인해 넘어진 사고

### 1. 가입사항

- ▶ 시 설 명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 보상한도액
  - 대 인 : 1인당 1천만원 / 1사고당 2천만원
  - 대 물 : 1사고당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1사고당 10만원
- ▶ 보험기간 : 2010. 01. 01. ~ 2010. 12. 31.

### 2. 사고사항

- ▶ 사고일시 : 2010년 9월 26일 01:25 경
- ▶ 사고장소 : ○○자전거·보행자도로
- ▶ 사고내용

상기 일시 경 피해자 ○○○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에 갔다가 자택으로 돌아 오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도로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 검토

본 사고는 피공제자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도도를 관리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자전거도로를 수시로 확인하여 도로상의 이물질 등으로 이용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공제자는 민법 제750조에 기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금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책임능력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고, 자전거의 운행 경력이 약 15년 정도 되었다는 점,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했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30%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 ▶ 보험금 지급 여부 검토

본 사고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피공제자는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험사는 영조물배상공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지급보험금

( 단위 : 원 )

구 분	보상한도액	합의금액	자기부담금	지급보험금
대 인	10,000,000	6,500,000	100,000	6,400,000



# 담당자 연락처

## 시·도지부

지 역	전 화	팩 스	E-mail
서 울	02-2171-2618	02-2171-2619	dm9866@klfa.or.kr
부 산	051-888-2736	051-888-2739	pusan@klfa.or.kr
대 구	053-803-3095	053-803-3069	daegu@klfa.or.kr
인 천	032-440-2667	032-440-8653	inchon@klfa.or.kr
광 주	062-613-3136	062-613-3119	kwangju@klfa.or.kr
대 전	042-600-5477	042-600-2849	daejeon@klfa.or.kr
울 산	052-229-6372	052-229-2539	ulsan@klfa.or.kr
경 기	031-8008-4180	031-8008-2339	gyeonggi@klfa.or.kr
강 원	033-249-2339	033-249-4028	kangwon@klfa.or.kr
충 북	043-220-8244	043-220-2839	chungbuk@klfa.or.kr
충 남	042-251-2318	042-251-2319	chungnam@klfa.or.kr
전 북	063-280-2334	063-280-3168	chonbuk@klfa.or.kr
전 남	061-286-3481	061-286-4831	chonnam@klfa.or.kr
경 북	053-950-2316	053-950-2330	kyongbuk@klfa.or.kr
경 남	055-211-3479	055-211-3459	kyongnam@klfa.or.kr
제 주	064-710-6918	064-710-6909	jeju@klfa.or.kr

#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처리 가이드

---

발행일 | 2011년 7월

발행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1-7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6층

디자인·인쇄 | 디자인 프리즘 (02)2264-1728

---

이 내용에 관하여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부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